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7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김승수 · 권영진 · 임이자

우재준 • 박충권 • 박정하

박성민 · 진종오 · 조승환

한기호 · 김장겸 · 주진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K-콘텐츠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세제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상콘텐츠의 경우 유통채널 다원화에 따라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 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일몰기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여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다큐멘터리"를 "교양"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
-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을 "출자하는"으로,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를 "제공일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 -----제1호-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 --문화콘텐츠-----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 --<u>문화콘텐츠</u>-----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콘텐츠-----「소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 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른 <u>소비자에게</u>-----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u>다큐멘터리</u> 및오락을 위한 프로그램나.·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u>문화콘텐츠</u>
가
<u>교</u> 양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힌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띠
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
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
<u>악영상파일</u>
<u>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힌</u>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
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u>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u>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u>영</u>
 <u> 상콘텐츠</u> 제작비용의 100
 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 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열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생 략)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u>영상콘</u> <u>텐츠</u>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제25조의7(대국법인의 문화산업 제25조의 제25조의

	따른 디지털만화 및 길	<u> </u>
	조 제5호의2에 따른 웹툰	<u> </u>
2		
기	}	-문
	화콘텐츠	
니	}	
	- <u>문화콘텐츠</u>	
2	(현행과 같음)	
3	문호	<u> </u> 콘
<u>텐츠</u>	<u> </u>	
	<u>.</u>	
25조	스의7(내국법인의 문화신	·업
전문	<u>'</u> 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출판만화 같은 조 제5호에

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 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해당 <u>영상콘텐츠</u>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는 비율

액공제) ①
문화
<u>콘텐츠문화</u>
<u>콘텐츠</u>
출자하는
<u>문화콘텐츠</u>
제공일과
<u>.</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문화콘텐츠</u>